

제 285 회

제 1 차

#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서천군 의회사무과

2020 년 10 월 14 일 (수) 11시 20분

## 의 사 일 정 (제1차 회의)

1. 서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천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4. 서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5. 종천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재)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기금 출연 동의안
8.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천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유재산(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12.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
13.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천 군관리계획(시설: 203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15.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 의 안 건

- |   |    |
|---|----|
| 1. 서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체의원외5인) .....                 | 2  |
| 2. 서천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동준의원외5인) .....                | 2  |
| 3. 서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현호의원외5인) .....                         | 3  |
| 4. 서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아진의원외5인) .....                          | 3  |
| 5. 종천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 3  |
|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 5  |
| 7. (재)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 9  |
| 8.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 10 |
| 9.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 15 |
| 10. 서천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 16 |
| 11. 공유재산(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무상사용 동의안(군수제출) .....                   | 16 |
| 12.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 16 |
| 13.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 25 |
| 14. 서천 군관리계획(시설: 203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 | 19 |
| 15.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 23 |

○위원장 김아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미정

의사팀장 서미정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김경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같은 날 군수가 제출한 중천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제의원외5인) (11시21분)

○위원장 김아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경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한 김경제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경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천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동준의원외5인) (11시23분)

○위원장 김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천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동준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한 조동준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천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동준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천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동준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이현호의원외5인) (11시25분)

○위원장 김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현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한 이현호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이현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이현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아진의의원외5인) (11시27분)

○위원장 김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종천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11시29분)

○위원장 김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천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성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 제안설명 ---

○위원장 김아진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성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5항, 종천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김아진

김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김경제 위원입니다. 지금 그럼 위탁비는 전혀 들이지 않고 자체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김경제 위원

그러면 물품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기본적인 물품들은 저번에 말씀드린 장비 이런 것들은 옷장이라든지 신발장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나머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는 TV라든지 세면도구 이런 건 자기가 가지고 와야 되겠지만 나머지 장비부분에 있어서 운영수칙에 자세하게 담아 놨거든요. 별도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을 운영자가 앞으로 유지보수를 하게 해줘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네.

○김경제 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유지보수에 관한 문제가 어느 정도 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규모,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고 이런 부분들까지 자꾸 요청하게 되고 또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요청하고 준비가 자꾸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현재 해주는 물품관리는 추후에는 본인들이 운영해서 다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건물유지보수도 최소한의 어떤 설정은 해줘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김경제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출입문이 고장났다’ 서천군한테 ‘고쳐줘라’ 이렇게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산정해서 이

부분을 좀 투자유치과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다른 실과하고 협력을 받아서라도 그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관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문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자동문은 아닙니다. 그냥 수동식으로.

○김경제 위원

예를 들자면 그냥 막 방치해 놓고 바람 불어도 그냥 놔두고 훼손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알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김아진

조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지금 위탁기간을 저희가 3년으로 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조동준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른 위탁비용을 지급하지도 않는 거고 실제 뭐 향후에 다른 주체에다가 위탁을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그렇죠.

○조동준 위원

그런데 왜 3년으로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통 3년 아니면 5년까지 가능한데……

○조동준 위원

5년까지 가능하고 그런데……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이라, 처음부터 5년으로 하기 위해서 3년으로 일단 했거든요.

○조동준 위원

이걸 뭐 다른 데다 뭐 줘서 수입금을 내고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3년씩 끊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3년간 운영해 보겠습니다.

○조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강신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농공단지에 보면 회장임기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네, 그렇죠. 협의회장.

○강신두 위원

회장 임기에 따라갈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3년도 하고 어떤 분은 5년도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는 과정에 어차피 회장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강신두 위원

그러니까 임기를 아까 3년 말고 회장 임기에 맞추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회장 임기가 보통 3년이에요. 그런데 보통 연임을 하더라고요. 할 사람이 없어요. 서로 안 맡으려고 하니까, 하던 사람이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연임을 시키더라고요.

○강신두 위원

회장이 바뀌는 거에 따라갈 수 있게 하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예, 맞는 소리입니다.

○강신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천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종천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수제출) (11시39분)

○위원장 김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범수

--- 제안설명 ---

○위원장 김아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김아진

김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마산 신봉리는 지금 공원 옆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범수

마산 신봉리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쪽으로 가는 오른쪽에 있는데 현재 논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신봉리 앞에 논이 있고요. 그 건너편 쪽으로.

○김경제 위원

마을회관을 두고 어느 쪽이에요?

○재무과장 박범수

마을회관을 두고 오른쪽.

○김경제 위원

마을회관을 보고 오른쪽이요? 마을회관 있는 쪽에?

○재무과장 박범수

예.

○김경제 위원

그러면 소방하수전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박범수

여기서 가다보면 마을회관 못 미쳐서 하우스 하나 있잖아요, 조금 못 미쳐서. 거기 앞에 거든요.

○김경제 위원

이게 신봉리 마을회관하고 붙어있는 땅도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박범수

붙어있지는 않아요. 1필지 건너.

○김경제 위원

1필지 건너서 매입이 필요해요, 그게?

○재무과장 박범수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길옆에 있는 땅이라서.

○김경제 위원

길이 좁아요?

○재무과장 박범수

예.

○김경제 위원

이것이 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범수

혹시 도로변에 있는 땅들은 매입을 해 놓고

자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경제 위원

장선리는?

○재무과장 박범수

바로 도로 옆이라서.

○김경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향후 우리가 부지가 필요해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매입만 하고 말아버려요. 언제 쓸지도 모르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최소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도로는 어떻게 확장이 필요하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쪽으로 활용하겠다는 활용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담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나대지로 놔둬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추후에 재산권 문제로 민간인하고 문제가 생기고 민원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매입을 하면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광장을 만들어 준 다든가 이런 대안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박범수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다만, 이 필지는 설명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어촌공사에서 갑자기 매각계획이 있어서 금년 안에 매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용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김경제 위원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충분히 어떻게 활용할 건가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박범수

알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강신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서면은 정수장 바로 옆인데 그거 뭐하러 쪼그만한거 사려고 해요?

○재무과장 박범수

그것도 내내, 여기가 사거리잖아요.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해서 흑여 향후 활용가능성……

○강신두 위원

가능성 자체가 없는 데예요, 거기는. 148평 갖다 뭐할 거예요, 군에서? 그 옆에 논 주인보고 사라고 해야지. 이거 좀 의문스럽네요, 진짜.

(웃으며)

이거 사가지고 또 임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범수

뭐 그럴 가능성은 있죠. 당장은 저희가 용도가 있어서 매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신두 위원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평당 지금 간다고 해도 10만 원 이상 줘야 될 것 같은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김아진

조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군사리는 왜 사요?

○재무과장 박범수

군사리는 이게 주택 인근 도로변에 있어서, 대지인데……

○조동준 위원

다 똑같은 이유시죠? 아니, 이 위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도로를 개설한 지역이고 이 조그만 곳 사서 밑에 노인회관이랑 다 있는데 다른 거 만들기도 어려운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 뚜렷한 활용계획은 없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매각을 요청했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박범수

예.

○조동준 위원

왜, 민간에다 그냥 매각을 하지 우리가 그걸 사나요?

○재무과장 박범수

활용가능성이나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군사리도 대지부분을 포함시켰습

니다.

○조동준 위원

아니, 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웃으며)

골목길 여기에 이만큼만 사서 무슨 활용가치가 있겠어요. 지금 화양도 답인데 이 위치에 논 옆에다가 뭘 만드시려고?

○재무과장 박범수

여기도 바로 길하고 접해 있는 토지거든요. 거기가 농경지인데 길이 좁아요, 화양 같은 경우는 사실.

○조동준 위원

그리고 화양 같은 경우에 72-1 답까지 같이 사시든가.

○재무과장 박범수

아니, 거기는 사유지인데 지금 저희가 매입할 수는 없고요.

○조동준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가요?

○재무과장 박범수

그쪽 사정은 모르겠는데요. 금년 안에 안하면 민간으로 매각한다고 해서 금년에 지금 급하게.

○조동준 위원

민간으로 매각을 한다고요?

○재무과장 박범수

예.

○조동준 위원

그럼 저희하고 대략 얘기 한 거예요?

○재무과장 박범수

예, 우리한테 먼저 필요한 땅이 있으면……

○조동준 위원

그럼 민간에 매각하라고 하세요. 왜 우리가 이걸……

(웃으며)

○재무과장 박범수

그런데 나중에…… 도로변이라서 저희도 여러 몇십필지 중에 현장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조동준 위원

민간에서 매각하는 거보다 지금 우리군에게 좀 낮은 가격으로 주나요?

○재무과장 박범수

군에서 사주는 것이 앞으로 활용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나올 거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동준 위원

어느 정도 저기라도 있어야지 이게 그냥 조그만 쪼가리땅들 사가지고 어떻게 쓰시겠다고.....

○강신두 위원

군사리 같은 데는 쌈지주차장밖에 안 되네.

○조동준 위원

여긴 쌈지주차장도 못 하는데예요, 군사리 같은 데는.

○재무과장 박범수

이것만 가지고 어떤 용도로 하기에는 사실은 작은 땅들인데 혹시나 도로가 넓혀진다가나 이런 경우에는.....

○조동준 위원

아니, 여기는 도로개설한지 얼마나 됐는데 여기 도로를 또 넓혀요? 그리고 넓힐 수도 없어요, 여기는.

○재무과장 박범수

군사리는 그렇지만 다른 경우는 도로 옆이라서.

○조동준 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범수

승인해주시면 사는 것이 나올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이유가 계획 없이 구매를 하게 되니까 그게 조금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계획도로 인근에 있는 거는 아닌가요? 지금 군사리 여기만 도시계획도로 주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재무과장 박범수

예.

○위원장 김아진

그리고 대부분 코너에 있어서 도로를 확장한 다든지 할 때는 또 필요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잘 판단을 하셨겠지만 위원님들 의견 좀 고려해서 다음번에도 공유재산 매입계획이 있을 때는 더 참고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재산취득내역에 보면 예산가액이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를 한 사항인가요? 정확하게 나온 금액은 아니죠?

○재무과장 박범수

아직은 예정가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예, 그러면 공시지가 대비해서 몇% 증액해서 해 놓은 사항이죠?

○재무과장 박범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아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라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조금 더 협의를 잘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기금 출연 동의안**

(군수제출) (11시54분)

**○위원장 김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승완 관광축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 제안설명 ---

**○위원장 김아진**

관광축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아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승완 관광축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김아진**

김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연기가 되는데 우리가 세계유산등재는 어떻게 보세요? 될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작년에 IUCN에서 현지실사를 하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연유산에 등재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있는데 6번부터 10번까지 인데요. 저희들은 10번이 멸종위기종 및 생물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가능성이 그러니까 갯벌에 대한 거보다도 지금 서식하는 철새들에 관련해서 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유부도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차별성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사항은 유부도 갯벌의 멸종위기종 새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존가치가 있다는 차별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그래서 10종이 있으면 1종에서 10종까지 저희들도 이번에 보게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1종부터 6종까진가는 문화유산이고요. 그 뒤에가 자연유산입니다.

**○김경제 위원**

한번 자료 좀 주시고.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김경제 위원**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지 몰라서 계속 미뤄질 텐데 우리가 미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군비부담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부 지역민들이나 군민들은 무조건 지금 등재될 걸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맞습니다.

**○김경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들지 않도록 군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어필을 우리가 해야지…… 그런 쪽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관리를 잘해서 혹여 또 우리가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축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기금 출연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기금 출연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김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13시31분)

○위원장 김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무협 문화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 제안설명 ---

○위원장 김아진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무협 문화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거 수)

○위원장 김아진

강신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2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꼭 전주사람들만 해야 되고 서천에 없어서 전북대학교에 주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공고했을 때에는 여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개만 공고에 입찰했습니다.

○강신두 위원

장항읍에다가 공고를 내봐요. 장항사람이 운영도 할 수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자격이 수반되는 거라서요.

○강신두 위원

자격을 낮춰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강신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승인 저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김아진

김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김경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도서관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맞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위원

물론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고 민간위탁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장항에 공공도서관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시설들이 10여 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연계가 없어요. 물론 공공도서관은 거기에 좀 못 미치더라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전적으로 운영관리를 운영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관에서 철저하게 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발해 내고 민간위탁하고 서로 접목을 시켜서…… 이게 보면 학생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어떤 도서관 이용에 관련해서 자유로운 것도 인정하고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타 시설과의 연계성을 가져서 그래도 지역에 뭔가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될 수 있도록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위원

장난감도서관도 처음에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장난감도서관이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를 앞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직영으로 하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 3년간이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법적으로.

○김경제 위원

3년에서 5년.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위원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좀 기간을 두고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직영이나 위탁이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전체를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제가 어제도 집행부에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고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는 우

선 우리가 1년 정도 연장을 하고 나서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은 거의 시스템으로 다 되기 때문에 옛날 처럼 도서를 찾아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갑작스레 하니까 이게 좀 그런데요,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에 직영이나 위탁이나 용역도 했었지만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냥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1년 연장 쪽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이게 조직 부서하고 하니까요—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별도의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와 관련해서 군정질의도 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탐험역도 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거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위원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시설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얘기하기는 이르지만, 저는 장래에 가서는 서천군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설립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왜 하필이면 우리 공공도서관부터 그러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지만 정책을 하려고 보면 늦었지만 자꾸 미루게 되면 어렵다고 봐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서…… 우리가 연장해서 운영해 가면서 다시

또 위탁을 주말정 위탁방법이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국비 따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국비 보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어떻게 보면 '1억 4,200만 원만 국비를 확보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또 사업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만 그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이런 팀을 좀 원하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러니까 지금 장항에 공공시설 한 9~10개 시설이 기획실에서 우선 기능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의 했지만 이런 거할 때 나중에 기능문제는 나오지만 직영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를 저희도 건의 하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김아진**

조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현재 관장을 포함해서 9명이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6명입니다.

**○조동준 위원**

산출표는 그냥 저기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그러면 관장과 사서에서 지금 인원이 비나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사서 4명, 관리 1명.

**○조동준 위원**

사서 4명, 관리 1명?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여기 산출표에 있는 단시간근로자는 채용을 안 했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일들은 네 분, 다섯 분 직원들이 알아서 하시나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6명이 근무하고요. 아까 청소하시는 분 한 분 해서. 정식직원은 아닙니다, 그분은.

**○조동준 위원**

그분은 정식 직원은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어쨌거나 인건비는 나갈 거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지금 관장님은 상근이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전북대학교에서 뽑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입찰에 응모를 합니다.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 산학협력단에서 직원들은 뽑느냐는 얘기에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김경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도서관장과 사서직원들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그렇습니다.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직영을 해도 사실은 도서관

장과 사서직원들은 우리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에서 굳이 저도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한 관점이라고 봤을 때 직영을 굳이 무리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질 운영은 결국에 도서관장과 사서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서관 프로그램의 전문성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거기 전북대 산학협력단도 협력단이 그냥 위탁만 받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보통 이렇게 대학교나 이런 데서 위탁했을 경우에 상근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산학협력단 뭐 거기에 있는 어떤 간부가 관장을 겸임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들도 있는데 그래서 여쭙본 거고.

여기는 도서관장이 상근이라고 하면 이 형태로 저희가 운영할 거라고 하면 직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저희는 어차피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도서관장과 사서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직영했을 때 도서관장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저희에서는 6급 팀장급 정도는 1명 있어야 되겠죠.

○조동준 위원

관리직원이지,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직접 가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닌 거니까. 직영을 하지만 또 직원들은 저희가 채용할 수 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그래서 아까 김경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1년 정도 기간은 주셔야 저희들이……

○조동준 위원

사실 저는 전북대학교가 그동안 잘 운영했다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그전에 문화원에서도 맡아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전문적인 프로

그램들은 못했었죠. 도서관의 기능들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저희가 새롭게 도서관 저렇게 지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전문성을 가진 관장이나 사서직원들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도서관법에 의해서 위탁을 맡을 수 있는 법인단체가 제한적이긴 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위원

뭐 6개월 이상 운영실적이 있거나…… 저희도 그렇게 세부기준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이들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한 곳만……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위탁법인단체에 저희가 이게 무슨 이윤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직원들만 채용해서 알아서 돌아가는 거니까 사실은 뭐 말으면 일이니까 하고 싶은 데가 많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북대학교에 그렇게 목맬 필요 없이…… 저도 다른 걸 떠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들이 많지 않은데 굳이 이걸 위탁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김아진

김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사서직은 지금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상근입니다.

○김경제 위원

상근하고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위원

제가 도서관에 자주 안 가서 그만한 인원을 본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걸 좀 판단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도서관은 도서관 역할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이 어쨌든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요. 그런데 예전에 도서관은 가서 책만 빌려다보고 책보고 하는데였지만 지금은 그게 주목적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장소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경제 위원

그래서 한번 전향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알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직인 사서나 관장이나 이런 자격이 되는 분들이 관내에 계신가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이분들은 도서관에……

○위원장 김아진

아니, 이분들 말고 서천군민 중에서 사서나 관장을 할 자격이 되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분들 말고 공모사업을 하면 다른 분들이 계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자격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이게 기관으로 입찰을 해야 되니까요, 개인으로 입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아진

입찰조건에 따라서 전북대학교 여기가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위원장 김아진

그럼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직영전환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외부에서 인력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위원장 김아진

위탁이든 직영이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위원장 김아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인력 양성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김아진

예, 김경제 위원님.

○김경제 위원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아진

토론 중에 김경제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위탁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 민간 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하고 그 외는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하고 그 외는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각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 제안설명 ---

○위원장 김아진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각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고, 의사일정 제9항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김아진

조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47페이지, 별건 아닌데요. 1항에 ‘영 제74조 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과 2항에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이 2개를 나눠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상위법에……

○조동준 위원

아니, 호까지가 같으니까 ‘가목, 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해도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가목, 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앞에 74조제2호까지도 같은 조항이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예.

○조동준 위원

제74조제2호 가목 나목에 따른 안전조치비용 뭐 이렇게 하면 2개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데.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아, 그런데 가목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이고요. 나목은 자연재해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조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첫 항에 가목 나목을 같이 넣어주면 되지 않는냐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아……

○조동준 위원

아니, 뭐 지금 다른 조항들 인용할 때 법 제 40조부터 제42조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조항들을 넣으니까 같이 넣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기금의 용도에서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에 대한 부분만 지원할 수 있다'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요즘 자연재해이라든지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다 어떤 항목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그 외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동준 위원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더 이런 정비가 필요했는데 적절한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네.

○조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천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유재산(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12.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

(군수제출)

(14시13분)

○위원장 김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천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희랑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 제안설명 ---

○위원장 김아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랑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천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김아진

조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1억을 출연하게 됐는데요. 기본재산출연 이것만 하고 마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이것은 기본출연금……

○조동준 위원

이후에는?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이후에는 일반 세출예산으로 편성……

○조동준 위원

그건 출연금은 아니니까, 그것은.

출연금 아니고 일반운영비나 경상비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예.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기본재산으로 잡히는 출연은 이 1회에 한해서 끝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일단 재단설립하기 위한 기본재산이 1억 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추후에 일반예산 그거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조동준 위원

출연금과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예.

○조동준 위원

예를 들면 기금은 이쪽재단에 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운영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기금조성은 별도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뭐 사회적경제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재산이 아니고 별도 조례에 의해서 가야……

○조동준 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통합해서 이 재단을 통해서 운영하기로 한 부분인데 말씀처럼 나머지 관련된 기금이나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그렇게 기존처럼 있는 건 있는 대로 운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머지 기금 문제들도 조정해서, 어차피 재단이 재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기본재산 1억만 해놓고 나머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4개의 중간지원조직에 정해져 있는 예산으로만 정해진 사업들만 해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군이 기본재산을 늘려가도록 출연할 수는 없지만 운영 중인 관련된 기금들을 이 재단하고 연결해서 운영되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이 출연동의안 건은 설립허가 절차에 있는 기본재산 관련된 동의안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거는 아마 별도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저희들도 현재 이 사항만 지금한 거고.

○조동준 위원

이 사항 이번에 1억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1억은 우리가 내는데 그 이후에 이 재단의 재원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래서 4개 센터가 원래 가지고 움직이는 예산은 그냥 그건 다 소진되는 예산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그렇죠.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기본재산 1억 외에 아무것도 없는 재단은 사실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예.

○조동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재산 1억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기금만 있던가요? 사회적경제기금하고 또 이와 관련된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는 별도로 저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예.

○조동준 위원

사회적경제기금도 이 재단하고 연결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재단의 재원에 대한 충당이나 확충을 고민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저희들도 고민하는 거는 생태원이나 자원관에서 기금형태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 절차는 별도의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가야…… 여

기에다가 재단 안에 담아내기에는 지금……

○조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군 자체적인 뭐 지속가능지역재단 관련된 기금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예.

○조동준 위원

그러면 재단하고 이중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재단이라고 하는 그 법인 주체가 저희가 이사까지 구성해서 하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별도의 기금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조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이라고 하는 그 성격이 재원을 통해서 움직이는 법인단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형식적으로 4개의 중간지원조직을 묶어서 운영하는 건 별개고, 재단의 본연의 역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원을 계속적으로 확충해서 그 재원을 지역의 다른 분야에 투자 되도록 만드는 게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을 계속 앞으로 더 어떻게 더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걸 설립에 필요한 출연이지만 사실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금처럼 매년 1억씩이라도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그거는 제가 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천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천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천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천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천 군관리계획(시설: 203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군수제출) (14시31분)

○위원장 김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천군 관리계획(시설: 203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해순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 제안설명 ---

○위원장 김아진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순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천군 관리계획(시설: 203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김아진

조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지금 신청사를 짓게 되면 현재 외청에 나가 있는 사업소들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신청사 계획에는 공공시설사업소하고 맑은물 사업소 이전 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동준 위원

그러면 그때도 계속 여기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렇습니다.

○조동준 위원

원래 그랬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왜냐하면 특히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장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비를 청사주변에 보유하고 또 그 장비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준 위원

그럼 현재 맑은물사업소, 공공시설소사업소, 그다음에 체육사업소는 저쪽에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센터에 지금 나가있죠.

○조동준 위원

그러면 거기도 들어갈 계획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체육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공설운동장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현재 청사계획 속에 역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동준 위원

그럼 그 세 가지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보건소하고요.

○조동준 위원

기술센터도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조동준 위원

아무튼 기존에 보건소하고 기술센터야 건물 가지고 있는 곳이니깐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위원

(거 수)

○위원장 김아진

김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공공청사로 바꾸면서 장터맛집 같은 데를 보면 장항 관문인데 참 지지분했었는데 이렇게 늦게라도 사유재산권이 행사되도록 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애쓰셨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미집행 관련해서 풀어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집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류작업은 어느 정도 다 끝났나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분류작업은 끝났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 3곳, 도로 144곳 이런 데는 20년이 경과된 이런 군 계획시설은 2020년 금년 7월에 실효가 돼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뒤로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군 계획시설들은 여전히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 있죠.

○김경제 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에 가면 또 20년이 지나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5, 2030 이런 계획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것들을 지금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하여튼 사전에 거기에 대해 분류작업을 정확히 해서…… 이게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는 우리가 군에서 장기미집행이 20년이 돼서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치못할 곳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네.

○김경제 위원

우리도 장기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 매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매입할 수 있는…… 물론 예산의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지만 그런 방안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사유재산권을 20년 동안 제한했다가 그때서

‘우리 책임 못 집니다. 돌려가져주세요’ 하는 것도 문제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렇습니다.

○김경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은 우리가 사업은 추후에 하더라도 그런 방안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조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지금 김경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일몰제 적용해서 했던 것들을 2020년도 올해에 한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내년도 20년 지난 것들에 대해서 일몰제를 지속적으로 연기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이게 현재 판결에 의해서 20년이 지난 것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되지 못한 것들은 자동 실효되게 판결이 났잖아요.

○조동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래서 그 뒤로 도시계획시설로 20년이 안 된 것들이 지정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시다시피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정된 것들이 대부분고요. 최근에 지정된 것들은 지금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조동준 위원

올해 일몰제는 그러니까 2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점검해서 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네.

○조동준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해제를 시켜 주라고 그랬던 거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네.

○조동준 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했을 때 20년 미만인, 뭐 19년 된 도시계획시설이 내년이면 20년 되는데 아까 말씀은 그 시설도 다시……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실행이 안 되면 실효되는 겁니다.

○조동준 위원

자동으로?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렇습니다.

○조동준 위원

확실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렇습니다.

○조동준 위원

별도의 조치없이 자연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조동준 위원

지금 20년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중에 남겨놓은 존치한 도시계획시설들을 그럼 그 시설들은 어떻게 돼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지금 현재 저희가 군계획시설이 전부 다 합치면 14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현재 존치한 것들이 9개예요. 9개인데 그중에 녹지가 1군데 있고 도로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20년이 도래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20년이 도래하는 기간 내에 저희가 시설을 하면 그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기간 내에 9개 시설들을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되는 겁니다.

○조동준 위원

제 얘기는 올해 20년 이상 됐던 시설들 중에 그러니까 해제되지 않은 풀지 않은 존치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게 9군데입니다.

○조동준 위원

근 20년 이상 된 것 중에.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그렇죠. 된 것 중에.

○조동준 위원

그런데 그것들은 내년에 나가면 저희가 그걸 집행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왜냐하면 존치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조동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러니까 이 9개 시설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게 불가피하게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는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확보도 못하고 못하게 되면 그거는 다시 도로부터 그 기간 내에 승인 받지 못하면 실효되는 겁니다.

○조동준 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최근에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그런데 존치를 하고 해제하지 않았는데 하겠다고 한 시설인데 우리 자체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못하겠다고 뒤로 뺐단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네.

○조동준 위원

그런 시설은 오히려 좀 아까 얘기한 취지에서,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 사실은 해지를 했어야 맞는데 그냥 존치를 시켜놓고 해지를 안 해놓고 세워놨던 예산마저 사실은 돌려서……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말씀대로 라면 내년에 사실은 해지가 자동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제가 알기로 그거는 서해병원 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동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지 아주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조동준 위원

그건 20년 미만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서 그거는 약간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조동준 위원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실효되거나 그런 건 없다는 얘기에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렇습니다.

○조동준 위원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렇습니다.

○조동준 위원

그럼 그게 자동적으로 돼요? 이번처럼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지금 2030계획을 다듬고 있는데요. 2030계획 속에 그런 내용 지금 이 공공청사 면적을 변경하는 이 계획들도 2030계획에 포함해서 그중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조동준 위원

2030계획이라는 건 2030년?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렇죠. 20년에서 30년 사이.

○조동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아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지금 다 해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위원장 김아진

그 해제를 할 때 고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아진

홈페이지나 이렇게 고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계획이 사실은 재작년부터 올해 7월부터는 해지된다 이 계획이 미리 다 있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아진

우리군은 해마다 5억씩 세워서 미리 대비를 하기는 했지만 그게 좀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아진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기금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매입을 꼭 필요한 시설들인 경우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도 이런 예산부족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매입을 못하면 해가 갈수록 그게 또 금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기금조성이나 이런 다른 방법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기금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세워주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아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천군 관리계획(시설: 203

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맑은물사업소와 공공시설사업소로 사용되는 관리계획 시설 203호 공공청사가 향후 추가 확장계획이 없어 장기 미집행 사유지를 제척해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주차장으로 사용중이나 미포함된 잔여 균유지를 포함해서 시설 면적을 조정하는 등 결정(변경)안에 대해 적절하다는 합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천군 관리계획(시설: 203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적절하다는 전원 합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50분)

○위원장 김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춘길 맑은물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 제안설명 ---

○위원장 김아진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춘길 맑은물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5항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거 수)

○위원장 김아진

조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

연 3개월 이내라고 하는 건 총 연장일을 애

기하는 건가요? 적용되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총 연장기간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재난이 발생할 때 심각단계가 예를 들어서 뭐 1개월……

○조동준 위원

한 달 했다가……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예, 그렇죠.

○조동준 위원

보름했다가 또 떨어져 또 보름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총합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이내에 해당된다는 얘기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그것은 총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발령시가 만약에……

○조동준 위원

3개월을 넘으면.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넘으면?

○조동준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3개월까지만 저희들이 해 준다는 얘기죠.

○조동준 위원

3개월까지만?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예, 만약에 1개월 될 수 있고 2개월 될 수 있고 3개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조동준 위원

5개월 이상 이 심각단계가 유지돼도 3개월까지만 우리는 이게 적용된다?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그렇습니다.

○조동준 위원

이게 그럼 이 기준은 아까 뒤에 법령에서는 개월까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이내로 이렇게 정해서 감면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준 위원

3개월이라고 하는 기준은 군자체적으로 판단하신건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예, 그렇습니다.

○ 조동준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다른 데도 그렇게 지금……

○ 조동준 위원

3개월 정도?

○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예, 왜냐하면 우리군은 현재 개정 중에 있지만 흥성군하고 금산만 현재 지금 앓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이 3개월 이내더라고요. 그리고 50% 하는 데도 있고 전면 감면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30% 감면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50% 이상으로 이렇게 감면을 시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 조동준 위원

그런데 오히려 3개월 이상 되는 게 더 문제인데, 장기간 지속됐을 때가 문제인데, 3개월 이내로 제한하면…… 그러니까 단적으로 코로나 예를 들었어도 이게 어쨌거나 주민들에게 여파가 덜 가도록 감면 해주는 차원인데 기한이 적으면 사실 여파가 적잖아요. 그런데 기한이 길어져야 사실은 피해를 더 많이 보고 부담이 많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한을 이렇게 3개월로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싶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저희들도 그걸 봤는데 너무 길게 줄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들 형평성도 보고했습니다.

○ 조동준 위원

총 6개월이 돼도 3개월분 것만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예.

○ 조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아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경제 위원

(거 수)

○ 위원장 김아진

김경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제 위원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자연마을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데도 공급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저희들이 일단은 급수가 가능한 지역도 물을 안 먹고 하는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저희들이 수도공급을 해서 수돗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현재 마을에서 급수로 마을상수로 사용하는 데가 85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올해 지나면 아마 80개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급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경제 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예.

○ 김경제 위원

우리가 상수도 공급이 당연히 공급이 가능해요, 100%.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닌 경우에.

○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예.

○ 김경제 위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도를 공급을 못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한테 수돗물을 공급하는 체계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무작정 아무나 해줄 수 없겠지만.

그런 분들 조사를 한번 읍·면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대부분이 본인들이 급수신청을 만약에 신청을 내면 50~6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 김경제 위원

그래서 그런 특이한 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그 이후에 군이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부탁 좀 드

릴게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예.

○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아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24분 속개)

○ 위원장 김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13.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시24분)

○ 위원장 김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 제안설명 ---

○ 위원장 김아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철현

---검토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제 위원

(거 수)

○ 위원장 김아진

김경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제 위원

김경제 위원입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과장님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셔서 인지하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 김경제 위원

그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토의도 해봤는데 결론을 못 내리는 입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적법화를 실시한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전을 하실 분들이 많다고 판단은 안 돼요.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 김경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가 위원님들의 주된 생각인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이전 희망농가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희망농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봤더니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고.

대부분이 적법화를 다는 못하고 자기들이 현재 축사를 운영하는 중에서, 뭐라고 할까, 만족하지 못하는 축산농가들이 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더 크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데 그분들이 다른 데로 희망하는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서 저희들은 그게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경제 위원

지금 고시도면이,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된다 하면, 고시도면이 최대한 빠르게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지형 도면 고시용역을 일단 착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10월달에 착수를 해서 한 3달 정도 공기를 쫓는데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제 위원

지금 어쨌든 밖에서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때문에 엇그제 농가단체에서 와서 이런저런 말 씀도 하셨는데 별도로 항의오거나 별도 민원 이런 것 있으세요? 이 가축사육 제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위원님들이 고심해서 간담회도 미리 한번 여셔서 의견들을 축산농가들한테 의견을 개진하고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저희들한테 별도로 건의나 항의한 사항은 없고, 다만 주민들한테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취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120건이나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라 저희들이 급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위원

그동안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아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아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이견이 있어 본 안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안건의 보류를 제안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천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의 성명과 수

강신두, 김경제, 조동준, 노성철, 이현호, 김아진 (6명)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재무과장	박범수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